##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3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허종식

정성호 • 전재수 • 윤후덕

박 정ㆍ이연희ㆍ이수진

이훈기 · 최기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2제13항 신설).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② (생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
	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
	여 위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